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13
----------	------

2023년 12월 1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3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23년 10월 23일
- 라. 상정일 :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22.7.19.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철거”를 추가하여 노후화된 작품 또는 안전의 문제가 있는 작품 등에 대해 철거 조치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18조)
- 건축주의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 시기를 “착공신고 시”에서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로 변경하여 심의 신청 시기를 구체화함(안 제19조제3항)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9조제6항)
-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변동될 경우 그 차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절차를 보완함(안 제19조2)
-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공모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은 위촉기간 중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참여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가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개선의견 내용 : 조례안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⑤(생략)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⑤(생략)

- 미반영 사유 : 본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주요 내용이 미술작품심의 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이기때문에, 추후 공공미술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시 두 위원회에 해당 내용 반영하겠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6. 15. ~ 7. 5.) 결과 : 의견있음

(가)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 또는 변경 시 작가 동의 절차 삭제 요청 : 관련 없음

(나) 경미한 변경 사항 범위 확장(5m→20m)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조례안과 동일한 범위로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범위 적정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7.19.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문화체육관광부, '22.10.31.)(이하 '표준조례안)」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22.4.28.)(이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등에 대한 철거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안 제18조제1항)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 신청 시기를 구체화(안 제19조제3항)하는 한편,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안 제19조제4항) 및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안 제19조제6항) 시 건축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신설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기금 출연 절차 및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 발생 시 그 차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규정(안 제19조의2)을 마련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모 의무대상을 규정(안 제20조제2항)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심의위원이 위촉기간 중 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안 제21조제3항)을 추가하였음
- 그 외 개정사항은 법제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현행 조례 내 통일된 단어 사용 및 자구 수정에 해당함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2. (생략)</p> <p>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④·⑤ (생략)</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공무원</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생략)</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회피하여야 한다.</p>
<p>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이하 “건축물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 ----- ----- ----- ----- 둔다.</p>
<p>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p>

현행	개정안
<p>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u>건축물미술작품</u></p> <p>2. <u>제20조제2항</u>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p> <p>3. <u>건축물미술작품</u>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u>교체</u></p> <p>② (생략)</p> <p>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① · ② (생략)</p> <p>③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u>착공신고 시</u>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④ 시장은 <u>제3항</u>에 따른 심의 결과를 <u>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u>,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u><신설></u></p>	<p>1. ----- <u>건축물 미술작품</u></p> <p>2. <u>제20조제3항</u>-----</p> <p>3. <u>건축물 미술작품</u>----- <u>교체, 철거</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u> -----</p> <p>-----.</p> <p>④ <u>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변경·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⑤ ----- <u>제3항과 제4항</u>----- <u>건축주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u> -----.</p> <p>⑥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u>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u>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p> <p>1. <u>작품명 변경</u></p> <p>2. <u>건축물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u></p> <p>제19조의2(기금의 출연절차 등) ① 「문화예술진</p>

현행	개정안
<p>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p> <p>① (생략)</p> <p><u><신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를 대행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모당선작 선정은 미</p>	<p><u>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과 「문화예술진흥법」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 출연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주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 ----- ----- -----.</p>

현행	개정안
<p>숯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 ~ 4. (생략)</p> <p>④ (생략)</p> <p>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생략)</p> <p><신설></p> <p>3.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작성·비치,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훼손·분실 시 건축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하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0조(권한의 위임)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p> <p>4. ----- 관리총괄표 ----- ----- -----</p>

나. 검토 내용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반영 사항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철거’ 추가(안 제18조)”

-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었던 사항을 ’22.10.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철거”를 추가함으로써 노후화된 작품 또는 안전의 문제가 있는 작품 등에 대해 철거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행조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미술작품 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3. 건축물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 	<p>제8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미술작품의 안전성 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위치의 적정성 3.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4. 제20조에 따른 공모대행의 작품선정 기준 및 절차 <p>②【시·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p>

- 그간 현행 조례에서는 ‘작품변경 심의’를 거쳐 작품을 변경하거나 ‘위치변경 심의’를 거쳐 작품의 위치 변경만 가능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노후화,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완전한

철거가 불가능했으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사항¹⁾과 「표준조례안」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철거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술품 철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변경심의 신청서’ 등을 활용하여 미술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철거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크게 ①노후화로 인한 미관저해, ②안전성 저하, ③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분류하여 심의하고, 사안에 따라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서 ‘승인’ 의결이 나면 철거 가능하도록 건축주에게 안내할 예정임

“건축물 미술품 설치 절차등(안 제19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건축주의 미술품설치계획서 제출 시기를 “착공신고 시”에서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로 변경하여 심의 신청 시기를 구체화하고자 하였음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미술품의 관리 등) [본조신설 2022. 1. 18.]

- ① 건축주(미술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품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미술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미술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상태의 점검,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p>
<p>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물 미술작품은 해당 건축물을 위하여 신규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품도 해당 건축물을 위하여 구입한 것임을 건축주가 증명한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③ 건축주는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시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p> <p>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180일】이내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작품명 변경</p> <p>2. 건축물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p>

- 현행 조례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건축주는 구청에 ‘착공신고 시’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착공신고 시’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건축물의 준공에 임박하여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미술작품 심의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 건축물 착공 이후 사전에 심의받지 않고 준공에 임박하여 미술작품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 결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승인의결이 없이 준공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준공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승인율이 60% 내외로 재심의를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미술작품 심의 신청시기를 구체화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최근 5년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23. 12월 기준)

구분년도	심의개최	심의작품수	승인작품수	승인율
2023	11회	176	119	68%
2022	14회	273	166	61%
2021	16회	282	126	45%
2020	16회	299	158	53%
2019	16회	451	178	40%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4항은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미술작품 심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9조제3항에서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의무와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교체시 심의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²⁾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³⁾에서 ‘건축주는 설치 또는

심의 승인된 미술작품의 설치위치 또는 작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하도록 명시되어있음. 현행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술작품 심의 의무와 관련하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철거”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등에 관련된 제19조에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시 심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겠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6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의 내용은 적절하다 판단됨

(2)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반영 사항

“기금의 출연절차등(안 제19조의2)”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는 「문화예술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5.>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미술작품
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3. 건축물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미술작품은 해당 건축물을 위하여 신규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품도 해당 건축물을 위하여 구입한 것임을 건축주가 증명한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는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설치 또는 심의 승인된 미술작품의 설치위치 또는 작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각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 출연 절차 및 건축물
의 설계변경 등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변동될 경
우 그 차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
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
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④ 생략
-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2022. 7. 19.>

[별표 2]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
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비용의 1
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⑥ (생략)

-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
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
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9.>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안 제20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공모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작품 공모 의무기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반영 사항
“심의위원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 금지(안 제21조)”**

- 현행 조례 제21조제3항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개선권고」 사항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공정성 제고’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미술작품심의위원은 위촉기간 중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참여 금지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고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15호

(중략)

○ 기타 유의사항

- 응모신청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모바라며, 증빙서류 각1부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별도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후 위촉하며,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이메일(또는 문자) 개별 통지합니다.
- 응모자격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에 설치되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제작·설치 및 심의신청 등의 활동을 금지하며, 이해관계 작품의 심의 시에는 회피·기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7.19.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문화체육관광부, ’22.10.31.)」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22.4.28.)」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등에 대한 철거에 관한 심의 근거를 명문화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준공 시기에 임박하여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 시기를 구체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반면 그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4항은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시 건축주의 의무사항을 조례상에 명문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를 반영하여 기금 출연 절차 및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 발생 시 그 차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모 의무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나 조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던 미술작품심의위원이 위촉기간 중 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이미 위원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반영 및 공정성 도모 측면에서 적절하다 판단됨

5.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8. 소 수 의 견 의 요 지 : 없 음

9.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 음

[붙임 1] 상위법령 및 표준조례(안) 참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개정 2022. 1. 18.></p> <p>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p> <p>①~④ 생략</p> <p>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2022. 7. 19.></p> <p>[별표 2]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p>⑥ (생략)</p>	<p>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 제3항·제9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로 한다.</p> <p>②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2호 가목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7 이하】로 한다.</p>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2. 1. 18.]</p>		<p>제3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p> <p>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p>	<p>⑤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있기 전에 건축물미술작품이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 <p>⑥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도지사】에게 이전·변경·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기금의 출연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시·도지사】와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영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 출연 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9.></p> <p>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건축·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p> <p>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2.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6.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p>[전문개정 2022. 7. 19.]</p>	<p>제5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축물미술작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시·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8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선정은 추천 또는 공모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하 “전문가 위원”이라 한다)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술·건축·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미술·건축·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예술경영 또는 예술행정 분야에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술·건축·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4. 그 밖에 미술작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도지사】가 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p> <p>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이내의 건축물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를 위한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p> <p>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미술작품의 안전성 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위치의 적정성 3.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4. 제20조에 따른 공모대행의 작품선정 기준 및 절차 <p>② 【시·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위원의 해촉)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p> <p>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최근 2년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건축물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항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제11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시·도】 누</p>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건축물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검수단은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확인서를 작성하고 【시·도지사】에게 검수 결과를 통보한다.</p> <p>제16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검수단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p> <p>② 검수단원은 건축물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p>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p>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p>		<p>위촉하며,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5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p> <p>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심사단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사단”으로 “위원”은 “심사단원”으로 본다.</p> <p>제17조(건축물미술작품 심사 회피) 심사단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건축물미술작품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p> <p>제18조(심사위원의 해촉) 【시·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19조(공모를 통한 건축물미술작품의 선정)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신청 시에 공모 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③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된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공모</p>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p>		<p>절차 및 선정결과에의 적정성에 따라 각 심의위원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평가에 반영하거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p> <p>제20조(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p> <p>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행위를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후 【18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적정한 건축물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하는 공모대행 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p> <p>제21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신청 및 공모대행 요청 접수 관련 업무 2.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통보 3.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p>4.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및 결과 통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최진영 (02-2133-2716)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3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22.7.19.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철거”를 추가하여 노후화된 작품 또는 안전의 문제가 있는 작품 등에 대해 철거 조치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18조)
- 나. 건축주의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 시기를 “착공신고 시”에서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로 변경하여 심의 신청 시기를 구체화함(안 제19조제3항)
- 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9조제6항)
- 라.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변동될 경우 그 차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절차를 보완함(안 제19조2)

- 마.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공모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 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은 위촉기간 중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참여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가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개선의견 내용 : 조례안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⑤(생략)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⑤(생략)

- 미반영 사유 : 본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주요 내용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이기에, 추후 공공미술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시 두 위원회에 해당
내용 반영하겠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6. 15. ~ 7. 5.) 결과 : 의견있음

- 제출의견

(가)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 또는 변경 시 작가 동의 절차
삭제 요청 : 관련 없음

(나) 경미한 변경 사항 범위 확장(5m→20m) 요청 : 문화체육
관광부 표준조례안과 동일한 범위로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범위 적정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최진영(☎2133-2716)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물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교체”를 “교체, 철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착공신고 시”를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를 “건축주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변경·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금의 출연절차 등)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 출연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주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30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관리대장”을 “관리총괄표”로 한다.

3.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 제3항과 제4항-----
-- 건축주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

⑥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19조의2(기금의 출연절차 등)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 작품의 설치) ① (생략)
<신설>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 작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주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를 대행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모당선작 선정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 -----

-----.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하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권한의 위임) -----

-----.

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러
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신설>

3.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작성·비치,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
· 훼손·분실 시 건축주에 대
한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

-----.

1.~2. (현행과 같음)

3.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4. ----- 관리총괄표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최진영 (02-2133-2716)